

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(북촌문화센터)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공공한옥 중 '북촌문화센터', '한옥지원센터', '마을서재'를 통합하여 사무 민간위탁 추진해왔으나, 정책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필요에 따라 '한옥지원센터'와 '마을서재'는 정책수행시설로 전환하여 직영하고, '북촌문화센터'는 대시민 대상시설로써 전문적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
-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(북촌문화센터) 운영지원

나. 위탁개요

- 대상시설 : 북촌문화센터
- 소재지 : 종로구 계동길 37 외 1
- 시설규모 : 대지 1,131.5㎡, 연면적 362.32㎡
- 위탁기간 : 2년 11개월('23.2.1. ~ '25.12.31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)
- 소요예산(안) : 578백만원 ※ '22년 예산(통합운영): 800백만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북촌의 장소성 및 한옥 콘텐츠를 반영한 체험, 공연, 전시, 교육 등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주민과 함께하는 공정관광 캠페인, 마을여행, 해설프로그램 운영
- 전통(현대)공예, 생활예술 등 관련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
- 시민한옥학교, 한옥캠프, 북촌인문학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
- 대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

라.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
-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민간위탁 사업 일부 변경 신규 위탁 추진계획 방침('22.2.9.)

마. 필요성

- '20년부터 시작한 북촌도시활성화사업 본격 착수에 따른 정책적 거점시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, 새로운 공간 매입 확보 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한옥 시설 활용이 타당
- '17년 2월부터 북촌문화센터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온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현재 북촌활성화사업 일부 기능과 민간위탁사업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어 공간의 활용도 혼재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하
- 한옥지원센터와 마을서재는 북촌활성화사업 거점시설로 전환 하여 정책시설로 직영하는 한편, 북촌문화센터는 민간위탁 지속 추진 통해 북촌 체험·홍보·교육시설로써 전문적 관리 및 활용 강화

바. 기대효과

- 시의 정책적 기능과 대시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·운영 기능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북촌 및 한옥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적극적인 시설 운영 통해 북촌문화센터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만족도 제고 지속

3. 추진일정

가. 추진경위

- 제270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: '16. 9월
- 최초 위탁 운영 개시(3년) : '17. 2월~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82.18점) : '19. 6월
- 제290회 시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별도보고 : '19. 11월
- 재계약 운영 개시(3년) : '20. 2월~
- 사업 일부 변경 및 신규 위탁 방침 수립 : '22. 2월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적정) : '22. 2월

위탁사무명	유형		위탁기간	심의결과
서울 공공한옥 (북촌문화센터) 운영지원	사무	신규(공모)	2년 11개월	적정

나. 향후계획

- 제306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 : '22. 3월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: '22. 6월
- 신규위탁 공모 및 수탁사 선정 : '22. 7월
-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, 위탁사무 인수인계 : '22. 9월
- 북촌문화센터 신규 수탁기관 운영 개시 : '23. 2월~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34조

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3년 예산 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조직담당관 심의('22.2.22.)

- '22년 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한옥정책과 건축자산문화팀 김성찬(☎2133-5580)